지부대의원선임규정

제정 2013. 1. 23. 개정 2013. 8. 20. 개정 2015. 2. 26. 개정 2016. 11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26조에 의거 선출되는 지부대의원(이하 "대의원"이라 한다) 의 자격, 산출기준 및 선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대의원의 자격) ① 대의원은 정관 제6조의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이어야한다. 다만, 지부 또는 지역대 인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지부 및 지역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② 협회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
제3조(지부별 대의원수) ① 지부별 대의원 수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대 : 당연직 대의원인 지역대장에 추가하여 선출할 대의원 수

회원 51명 ~ 75명: 1명

회원 76명 ~ 125명 : 2명

회원 126명 ~ 175명 : 3명

회원 176명 이상~ : 4명

- 2. 일반회원 : 지역대에 소속되어 활동하지 않는 지부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의거 선출한다.
- 3. 일반회원은 회원관리규정 제2조 제2항 제1호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1항의 정회원 수 계산은 대의원 임기만료일전 6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4조(대의원 선출방법)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절차 등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부 및 지역대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5조(대의원 확정 및 통보) ① 각 지부 협회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<별지 1>에 의거 작성한 후 대의원 임기개시일 30일전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총재는 제4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등을 심사한 후 최종 확정하고 대의원 임기개시일 15일전까지 <별지 2>의 선임장을 각 지부 경유, 본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 - ③ 각 지부 협회장은 제2항에 의한 대의원 선임장을 전달받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전달하여야 한다.

- 제6조(대의원의 보선) ① 대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준한다.
 -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. 23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(2013. 8. 20)로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하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하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대의원 선임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대의원 선출 명단

번	ৡ	성 명	생 년 월 일	주	소	연	락	처	刊	고

한국해양구조협회 지부대의원 선임규정에 의거 상기자를 지부대의원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 20
 년
 월
 일

 지부
 협회장
 ①

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귀하



제 호

선 임 장

소 속: 지부

성 명:

귀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26조 및 지부대의원 선임규정에 의거 지부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기에 선임장을 드립니다.

(임기 : 20 . . ~ 20 . . .)

20 년 월 일

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